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(최민희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3660

발의연월일: 2024. 9. 4.

발 의 자:최민희·김남희·김용만

김준형 • 문진석 • 박민규

유동수 • 이병진 • 이원택

이정헌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방송통신의 진흥을 지원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통신발전기금(이하 "기금"이라 함)을 설치하고, 기금의 재원으로 지상파방송사업자,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및 인터넷멀티미디어 방송제공사업자 등 「방송법」과 「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」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허가·승인을 받은 방송사업자에 대하여 분담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.

그런데 현행 분담금 부과 제도가 방송광고 매출액만을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어 지상파방송사업자 등이 방송협찬 매출액을 늘리고 방송광고 매출액을 줄이려는 유인으로 작용하고 있고, 그 밖에 기술의 발달로 인한 방송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측면이 있음.

이에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상파방송사업자 등에게 방송광고 매출액

과 방송협찬 매출액을 더한 금액을 기준으로 분담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,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전년도 매출액이 3천억원을 초과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복수채널사용사업자로부터 분담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25조제2항 및 제3항).

법률 제 호

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5조제2항 중 "매출액"을 "매출액과 방송협찬 매출액(「방송법」 제2조제22호에 따른 협찬고지를 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)을 더한 금액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"「방송법」에 따른 종합유선방송사업자, 위성방송사업자 및「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」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제공사업자로부터"를 "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송사업자로부터"로 하며,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1. 「방송법」에 따른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
- 2. 「방송법」에 따른 방송채널사용사업자가 여러 개의 방송채널사용사업을 겸영하는 경우로서 전년도 매출액이 3천억원을 초과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
- 3. 「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」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분담금 징수에 관한 적용례) 제25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분담금을 징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5조(기금의 조성) ① (생 략)	제25조(기금의 조성) ① (현행과
	같음)
② 방송통신위원회는 「방송	2
법」에 따른 지상파방송사업자	
및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	
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	
용사업자로부터 전년도 방송광	
고 <u>매출액</u> 에 그 100분의 6의	<u>매출액과 방송협찬 매출액</u>
범위에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정	(「방송법」 제2조제22호에 따
하여 고시하는 징수율을 곱하	른 협찬고지를 한 경우로서 대
여 산정한 분담금을 징수할 수	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
있다.	라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)을
	<u> 더한 금액</u>
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	3
「방송법」에 따른 종합유선방	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
송사업자, 위성방송사업자 및	당하는 방송사업자로부터
「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	
법」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	
어 방송 제공사업자로부터 전	

년도 방송서비스 매출액에 그 100분의 6의 범위에서 과학기 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 시하는 징수율을 곱하여 산정한 분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.

<신 설>

<신 설>

④ ~ ⑨ (생 략)

- 1. 「방송법」에 따른 종합유선

 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

 자
- 2. 「방송법」에 따른 방송채널
 사용사업자가 여러 개의 방송
 채널사용사업을 겸영하는 경
 우로서 전년도 매출액이 3천
 억원을 초과하는 등 대통령령
 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
 방송채널사용사업자
- 3. 「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 업법」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 디어 방송 제공사업자
- ④ ~ ⑨ (현행과 같음)